

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1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'충무로 영상센터'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 발전을 목표로 시민들의 영상·전시물 향유를 위한 지원사업, 영상관련 교육 및 장비제공,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 중으로,
- 나.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,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,
- 다.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(시설형)
- 위치 : 중구 퇴계로 지하199 충무로역사내 지하1층
 - 규모
 - 시설규모 : 전체면적 371㎡
 - 보유장비 : DVD 5,157편, 서적 2,596편, 장비 80종 471개
 - 부대시설 : 아카이브실, 전시실, 상영관, 창작지원실 등

나. 위탁기간 : 1년 (2025.1.~2025.12.)

다. 소요예산 : 324백만원('24년 기준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마. 위탁사무내용

- 국내외 다양한 영상·전시물의 소개를 위한 사업
- 영상·시각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영상·서적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·전시관 지원
- 영화인 및 일반 시민을 위한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
-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정보 공유, DB구축, 네트워크 활성화
- 기타 공공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

바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 근거
 -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3조 및 제12조
 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, 제6조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, 영화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
 -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,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증가,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기대 가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3조, 제12조

제3조(영상진흥시책의 수립)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
2.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지와 지원 방안
3.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
4.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
5.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개최 국내·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
6.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7.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
8.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3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4조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실 창조산업과 한재운(☎2133-9227)